



캘리포니아주 권익 보호 및 옹호 시스템  
↳ 무료 전화 (800) 776-5746

#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따라 소아 및 유아(0-3 세)가 지역 센터에서 모국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016 년 4 월 발행. #F100.03

이 자료표는 0-3 세의 발달장애 소아 및 유아를 위한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센터의 정보와 서비스를 모국어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출판물: “3 세 이상 대상자가 지역 센터의 정보와 서비스를 모국어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lifornia.org/pubs/F10101.pdf>.

상원 법안(SB) 555(Correa)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법은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센터가 귀하에게 모국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해당 법안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leginfo.ca.gov/pub/13-14/bill/sen/sb\\_0551-0600/sb\\_555\\_bill\\_20131009\\_chaptered.pdf](http://www.leginfo.ca.gov/pub/13-14/bill/sen/sb_0551-0600/sb_555_bill_20131009_chaptered.pdf)

지역 센터의 서비스 수혜자 중에는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영어 구사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소아/유아가 지역 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영어를 말하고 읽거나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어를 전혀 못하거나 잘 못하는 수요자와 그 가족도 지역 센터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 “모국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따라, "모국어"는 아동의 부모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34 C.F.R. sec. 303.25(a); Cal. Gov. Code sec. 95020(g)(1)**. 예를 들어 귀하의 영어 구사력이 제한적이고 주로 스페인어로 말하는 경우라면 스페인어가 모국어가 됩니다.

2. 귀머거리이거나 청각 장애 또는 장님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서 이런 경우의 모국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모국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화나 점자 또는 구두 소통 방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4 C.F.R. sec. 303.25(b); Cal. Gov. Code sec. 95020(g)(1)**.

3. 자녀가 현재 조기 시작 프로그램 자격 또는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자격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받는 중이라면 그 부모가 모국어로 진단 및 평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예. 지역 센터가 명백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진단 및 평가는 귀하의 모국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3.321(a)(5); Cal. Gov. Code sec. 95020(g)(1)**. 모국어가 베트남어라면 지역 센터는 진단 및 평가를 베트남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자격 여부 결정 회의 및 1차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회의는 지역 센터에 의뢰된 후 45일 이내에 모국어로 실시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3.310; Cal. Gov. Code sec. 95020(b)**.

4. 가족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 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모국어로 진행해야 합니까?

예. 가족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일원의 평가는 지역 센터가 명백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 대상자의 모국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34 C.F.R. sections 303.321(a)(6), 303.25; Cal. Gov. Code sec. 95020(g)(1)**.

5.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회의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의 모국어로 진행되어야 합니까?

예. 지역 센터가 명백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의 IFSP 의 계획 과정과 그 회의를 모국어로 진행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sec. 303.342; Cal. Gov. Code sec. 95020(g)(1). IFSP 는 6 개월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이보다 자주 검토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3.342(b); 17 C.C.R. sec. 52102(b).

6. IFSP 의 사본을 모국어로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 센터는 IFSP 내용을 귀하의 모국어로 빠짐 없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34 C.F.R. sec. 303.342(e).

지역 센터가 그렇게 하는 데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고 발달 서비스 부(DDS)가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센터는 IFSP 의 사본을 또한 귀하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Cal. Gov. Code sec. 95020(g)(1); 22 C.C.R. sections 98210-98211.

7. 본인의 IFSP 사본을 모국어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발달 서비스 부(DDS)가 그렇게 하는 데 지역 센터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 Govt. Code sec. 95020(g)(1); 22 CCR sections 98210-98211. 만약 귀하께서 번역된 IFSP 를 빨리 받을수록 해당 서비스에 더 빨리 동의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지역 센터에 알린다면, 해당 번역본을 좀 더 빨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상태를 다루기 위한 서비스를 좀 더 빨리 받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8. 지역 센터는 IFSP 에 본인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기록해 놓아야 합니까?

예. 지역 센터는 귀하의 모국어를 IFSP 에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Cal. Gov. Code sec. 95020(g)(2). 예를 들어 귀하가 주로 한국어로 말하는 경우 IFSP 에는 귀하의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9. 지역 센터가 본인의 모국어를 기록하지 않거나 평가, 진단 또는 계획 과정을 본인의 모국어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 센터가 귀하의 모국어를 기록하지 않거나 평가, 진단 또는 계획 과정을 귀하의 모국어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 C.C.R. sec. 52170.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려면 다음 주소로 간단한 편지를 보내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Office of Human Rights and Advocacy Services  
Attn: Early Start Complaint Unit  
1600 Ninth Street, Room 240, M.S.-215  
Sacramento, CA 95814

편지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벌어진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한 내용, 관련자의 이름 및 원하는 구제 방안을 기록해야 합니다. 불만 신고는 귀하의 모국어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귀자녀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DDS 웹사이트에서 해당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dds.ca.gov/Forms/docs/DS1827.pdf>.

불만 신고서가 접수되면 DDS 는 60 일 이내에 정보를 조사하고 추가 정보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정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판정한 후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 서면 결정문에는 발견 사실, 결론, 사유 및 필요한 시정 조치, 시정 조치 일정, 과오 발생 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17 C.C.R. sec. 52171.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특수 교육에 대한 권리 및 책임 편람 제 12 장, 질문 27 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12.pdf>

불만을 제기하는 대신에 공평한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청문을 신청하면 다음의 링크에서

[http://www.dds.ca.gov/Complaints/complt\\_esdueprocess.cfm](http://www.dds.ca.gov/Complaints/complt_esdueprocess.cfm) 청문 요청 양식을 이용하여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청문 날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문은 행정법 판사(ALJ)의 주재로 실행됩니다. 지역 센터가 증거와 증인을 제시한 다음 귀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청문의 결정은 귀하의 청문 신청 30 일 내에 행정법 판사가 서면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청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ds.ca.gov/Complaints/complt\\_esdueprocess.cfm](http://www.dds.ca.gov/Complaints/complt_esdueprocess.cfm) 및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48401.pdf>.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